

---

# 2016년 부천대학교 자체평가 결과 요약보고서

---

2016. 12. 27.

부 천 대 학 교

# 목 차

I. 자체평가의 개요 .....	1
1. 자체평가의 목적 .....	1
2. 자체평가의 추진체계 .....	1
3. 자체평가의 내용 .....	2
II. 자체평가 결과 .....	5
1.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.....	5
2. 교육과정 .....	5
3.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 .....	5
4. 산학협력 .....	6
5. 학생 및 도서관 .....	6
6. 교원 .....	7
7. 경영 및 재정 .....	7
8. 물적·기술적 자원 .....	8
9.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.....	8
III. 평가결과 활용 계획 .....	9

# I. 자체평가의 개요

## 1. 자체평가의 목적

- 직업교육의 질 보장
- 기관의 책무성 증진
- 직업교육의 질 개선 지원
- 직업교육수요자에 대한 정보 제공
- 교육의 질에 대한 국제적인 등가성 및 통용성 확보
- 직업교육의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

## 2. 자체평가의 추진체계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고등교육법」제11조의2

제11조의2(평가 등) ① 학교는 [교육부령](#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, 조직과 운영,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인정기관"이라 한다)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(학부·학과·전공을 포함한다)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·인증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5.12.22.>

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, [제10조](#)에 따른 학교협의체,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[지정할 수 있다](#). <개정 2013.3.23.>

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,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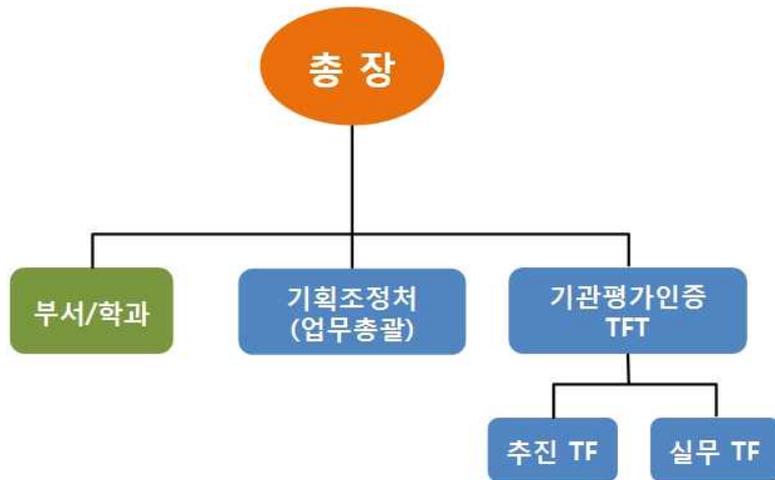
[전문개정 2011.7.21.]

- 「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」제2조

제2조(평가·인증의 실시) ① 「고등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(이하 "인정기관"이라 한다)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·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인정기관은 평가·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·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·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## 나. 자체평가의 추진 조직



[그림 1] 평가인증제 추진을 위한 조직

## 3. 자체평가의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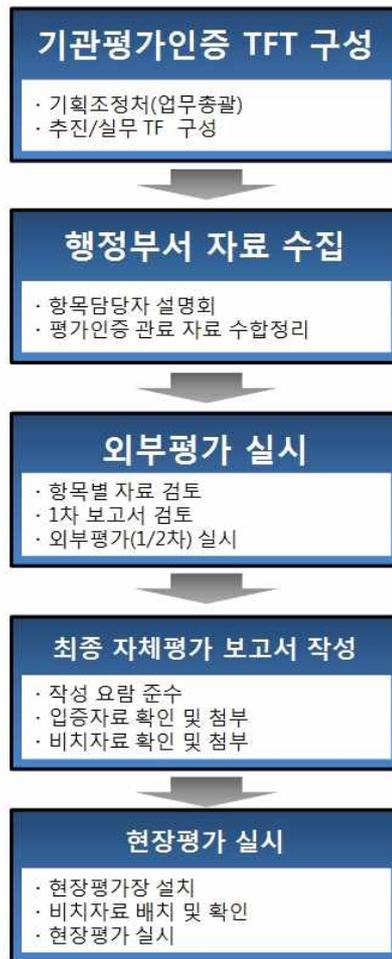
- 전문대학 2주기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자체평가 체크리스트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, 세부 평가영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

<표-1> 평가영역과 세부기준

기준	세부기준	평가요소
1.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	1.1 사명과 교육목표	<input type="checkbox"/> 1.1.1 대학의 사명
		<input type="checkbox"/> 1.1.2 대학의 교육목표
	1.2 특성화 및 발전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1.2.1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수립
		<input type="checkbox"/> 1.2.2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평가
2. 교육과정	2.1 교육과정의 질 보장	<input type="checkbox"/> 2.1.1 교육과정 정책
		<input type="checkbox"/> 2.1.2 교육과정 개발
	2.2 전공 및 교양 교육	<input type="checkbox"/> 2.2.1 현장중심 전공 교육
		<input type="checkbox"/> 2.2.2 직업기초 교양 및 기초학습 교육
	2.3 평생교육	<input type="checkbox"/> 2.3.1 평생교육 지원 조직
		<input type="checkbox"/> 2.3.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
3.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	3.1 학사관리	<input type="checkbox"/> 3.1.1 학사관리 규정 및 준수
		<input type="checkbox"/> 3.1.2 수업관리
		<input type="checkbox"/> 3.1.3 학생선발
		<input type="checkbox"/> 3.1.4 학생 성취도 평가
	3.2 교육성과	<input type="checkbox"/> 3.2.1 졸업생 취업률
		<input type="checkbox"/> 3.2.2 교육만족도
		<input type="checkbox"/> 3.2.3 재학생 충원
	3.3 교수학습 지원	<input type="checkbox"/> 3.3.1 교수학습 지원체제
		<input type="checkbox"/> 3.3.2 교수학습 지원활동 평가 및 개선
	4. 산학협력	4.1 산학협력 교육활동
<input type="checkbox"/> 4.1.2 산학협력활동 및 개선		

기준	세부기준	평가요소	
	4.2 취창업지원 활동	<input type="checkbox"/> 4.2.1 취창업지원 체제	
		<input type="checkbox"/> 4.2.2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	
	4.3 현장실습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4.3.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	
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4.3.2 현장실습교육 평가 및 개선	
5. 학생 및 도서관	5.1 학생지원 및 상담	<input type="checkbox"/> 5.1.1 학생지원 체제 및 안전관리	
		<input type="checkbox"/> 5.1.2 학생자치 활동	
		<input type="checkbox"/> 5.1.3 언론활동의 보장	
		<input type="checkbox"/> 5.1.4 상담 및 대학생활 정보제공	
	5.2 학생복지 지원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5.2.1 복지 지원	
		<input type="checkbox"/> 5.2.2 장애학생 및 다문화 가족 학생지원	
	5.3 도서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5.3.1 도서관 지원 체제	
		<input type="checkbox"/> 5.3.2 도서관 지원 평가 및 개선	
6. 교원	6.1 교원의 선발과 평가	<input type="checkbox"/> 6.1.1 교원 임면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	
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6.1.2 교원의 확보	
		<input type="checkbox"/> 6.1.3 교원의 평가	
		<input type="checkbox"/> 6.1.4 비전임 교원의 적합성	
	6.2 교원의 활동	<input type="checkbox"/> 6.2.1 교원 역량 개발	
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6.2.2 교육활동	
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6.2.3 연구	
7. 경영 및 재정	7.1 리더쉽과 행정관리	<input type="checkbox"/> 7.1.1 대학의 조직과 운영	
		<input type="checkbox"/> 7.1.2 총장의 리더쉽	
		<input type="checkbox"/> 7.1.3 의사결정 구조	
	7.2 인사 및 복지	<input type="checkbox"/> 7.2.1 직원 인사관리	
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7.2.2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	
	7.3 재정계획과 운영관리	<input type="checkbox"/> 7.3.1 장단기 재정운영계획	
		<input type="checkbox"/> 7.3.2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	
		<input type="checkbox"/> 7.3.3 재정지원의 다양성	
	7.4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7.4.1 교육비의 환원	
		<input type="checkbox"/> 7.4.2 재정운영의 적절성	
		<input type="checkbox"/> 7.4.3 감사제도	
	8. 물적·기술적 자원	8.1 물적자원 계획 및 평가	<input type="checkbox"/> 8.1.1 물적자원 계획
<input type="checkbox"/> 8.1.2 물적자원 평가 및 개선			
8.2 교육 및 지원시설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8.2.1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보 및 유지	
		<input type="checkbox"/> 8.2.2 정보전산 시스템 지원 및 운영	
		<input type="checkbox"/> 8.2.3 정보보안 체계	
8.3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8.3.1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	
		<input type="checkbox"/> 8.3.2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	
9.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		9.1 대학의 책무	<input type="checkbox"/> 9.1.1 대학의 윤리적 책무
	<input type="checkbox"/> 9.1.2 대학의 사회적 책무		
	9.2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	<input type="checkbox"/> 9.2.1 교육품질의 평가체제	
		<input type="checkbox"/> 9.2.2 교육품질의 평가 및 개선	
기준 : 9개	세부기준 : 25개	평가 요소 62개	<input type="checkbox"/> 정성적 평가요소 47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량적 정성 평가요소 15개

## 가. 자체평가 절차



[그림 2] 사후점검 추진 절차

## 나. 자체평가 방법

- 평가방법은 평가기준별로 인증원이 제시한 사후점검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함
- 정성평가와 정량적 정성평가방법의 적용 비율은 7.5:2.5로 구성  
(정성평가는 47개(75%), 정량적 정성평가는 15개(25%) 적용)
- 필수 평가요소는 정량적 정성평가방법 적용

## Ⅱ. 자체평가 결과

### 1.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

1.1 대학의 사명

- 대학은 설립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사명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재정운영계획수립에 따른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음

1.2 특성화 및 발전계획

- 특성화 및 장단기발전계획은 목표달성을 위한 부서별, 학과별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, 개선환류를 통한 구성원 공유 및 평가 우수부서/학과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

### 2. 교육과정

2.1 교육과정의 질 보장

-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평가체제(PDCA)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,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

2.2 전공 및 교양교육

- 대학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산업체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전공교육과 교양교육 운영정책이 수립되어 있으며, 학과목표에 연계한 학습목표 및 성취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현장중심교육의 질과 수준을 보장하고 있음

2.3 평생교육

-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, 평가, 교육에 교직원 지원체제가 구축되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운영됨으로서 학점인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정규 학위과정과 동등한 교육의 질과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음

### 3.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

3.1 학사관리

-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과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학사관리규정을 비롯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수업관리 및 학생 성취도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

3.2 교육성과

-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품질향상의 중심축인 교원들의 교수법향상을 위한 창의교수법특강,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교육 등의 특강, 강의개선 컨설팅 등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음

3.3 교수학습 지원

-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조직 및 협력체제를 통해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수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 개선하고 있음

## 4. 산학협력

4.1 산학협동 교육활동

- 산학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,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고 있음

4.2 취·창업지원 활동

- 학생의 취·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산업환경 변화 및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취·창업지원계획을 수립, 실현함으로써 학생의 졸업 후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, 취·창업지원활동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 개선하고 있음

4.3 현장실습

-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업체 현장실습 교육을 평가기준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음

## 5. 학생 및 도서관

5.1 학생지원 상담

-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의 자치활동(학생회, 동아리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있음

5.2 학생복지 지원

- 학생의 학습동기를 촉진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대학생활 및 학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음

5.3 도서관

- 수요자 요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에 따른 체제를 갖추어 시설과 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음

## 6. 교원

6.1 교원의 선발과 평가

-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학문적 실무적 자질을 갖추신 교원들을 적정한 수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,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선발규정에 의해 신규 임용을 하고 있음

6.2 교원의 활동

-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6주 이상의 연구년 및 산업체연수 등에 대한 교원 역량개발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매년 1명 이상의 교원이 16주 이상의 연구년을 시행하고 있고, 전공교육, 직업교육 관련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

## 7. 경영 및 재정

7.1 리더쉽과 행정관리

- 대학은 "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대학"으로 비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, 비전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중장기발전계획202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

7.2 인사 및 복지

-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,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관련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

7.3 재정계획과 운영관리

- 대학은 재원의 효율적 확보와 운영을 위한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을 2020년까지 연차별로 수립하고 재정안정화 계획 및 등록금이외의 재원확보 계획을 추진 운영하고 있음

7.4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

- 대학은 2014, 2015년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행완료 후 조치결과를 공시하고 있음

## 8. 물적·기술적 자원

8.1 물적자원 계획과 평가

- 대학은 사용자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단기 물적자원 확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, 물적지원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음

8.2 교육 및 지원시설

-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, 학생의 교내생활 편의 및 건강·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시설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음

8.3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

-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험실습 교육 운영을 위하여 질적·양적으로 충분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·유지·개선하고 있음

## 9.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

9.1 대학의 책무

- 대학은 “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다운 가람이 되자”라는 건학 정신아래 사회봉사 교과목, 사회봉사단 카페 운영, 사회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해외봉사활동, 농촌봉사활동 등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봉사 정책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

9.2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

- 대학은 평가와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, 기획조정처가 주관하는 대학자체평가위원회, BSC자체평가소위원회가 평가와 개선을 위한 활동체계를 갖추어 교육의 질적 개선을 하고 있음

### Ⅲ. 평가결과 활용계획

-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점을 반영하여 개선계획 수립
- 교육수요자들에게 대학의 투명도와 객관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공개
- 대학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업무 선진화 자료로 활용
- 교육품질 유지·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 구축